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2021-33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우편물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 11. 29.

인천해양경찰



1. 공고사유 : 행정처분(당연무효)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1. 11. 29 ~ '21. 12. 1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극

등기번호	주소	반송사유	발송일 (반송일)
14071-0260-505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41번길 34-1 나동 302호	폐문부재	'21.11.04. ('21.11.11.)
14071-0176-749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41번길 34-1 나동 302호	폐문부재	'21.11.12. ('21.11.18.)

4. 행정처분 부과 행정청 : 인천해양경찰서

- 문의사항 : 수상레저계 경장 김효은 (Tel. 032-650-2451, Fax. 032-650-2951)

5. 게시장소 :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하늘바다파출소 게시판

6. 공고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및 제20조 (무면허조종의 금지)에 따라 위반 행위자의 성명, 위반사항, 해당 면허의 당연무효 처분의 사실 등을 고지합니다.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공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천해양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제5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반납 바랍니다.